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- 374호

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
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6. 30.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1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

가. 월 단위 차주 원가

(단위 : 원/월)

품목	고정 원가	변동 원가	합계	적용기간
철강재	2,782,342	6,055,225	8,837,567	'23.1.1 ~ '23.3.31
	2,782,342	5,714,117	8,496,459	'23.4.1 ~ '23.6.30
	2,782,342	5,314,864	8,097,206	'23.7.1 ~ '23.12.31

* (고정 원가항목) 차량감가상각비, 차량구입금융비, 보험료, 번호판이용료, 지입료, 자동차세, 정기검사비, 환경개선부담금, 협회·단체비, 세무신고비, 통신비, 차고지비 및 주차료, 숙박비, 사회보험료, 출퇴근비, 정보망이용료

** (변동 원가항목) 주연료비, 통행료,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, 타이어비, 세차비, 기타소모품비

나. 1km 단위 차주 원가

(단위 : 원/km)

품목	단위 원가	비고
철강재	1,060	'23.1.1 ~ '23.3.31
	1,019	'23.4.1 ~ '23.6.30
	971	'23.7.1 ~ '23.12.31

다. 차주 운송정보

(단위 : km/월, 건/월, 일/월)

품목	월 운송거리	월 운송건수	월 운송일수	비고
철강재	8,341	35.6	22.9	'23.1.1 ~ '23.3.31
	8,341	35.6	22.9	'23.4.1 ~ '23.6.30
	8,341	35.6	22.9	'23.7.1 ~ '23.12.31

2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
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

가. 월 단위 차주 원가

(단위 : 원/월)

품목	고정원가	변동원가	합계	비고
1톤 일반형 화물차	791,821	1,058,905	1,850,726	'23.1.1 ~ '23.3.31
	791,821	1,007,251	1,799,072	'23.4.1 ~ '23.6.30
	791,821	946,792	1,738,613	'23.7.1 ~ '23.12.31
5톤 일반형 화물차	1,312,788	3,359,889	4,672,677	'23.1.1 ~ '23.3.31
	1,312,788	3,173,786	4,486,574	'23.4.1 ~ '23.6.30
	1,312,788	2,960,157	4,272,945	'23.7.1 ~ '23.12.31
12톤 일반형 화물차	2,025,533	4,469,503	6,495,036	'23.1.1 ~ '23.3.31
	2,025,533	4,227,159	6,252,692	'23.4.1 ~ '23.6.30
	2,025,533	3,943,505	5,969,038	'23.7.1 ~ '23.12.31
25톤 일반형 화물차	2,492,076	6,160,475	8,652,551	'23.1.1 ~ '23.3.31
	2,492,076	5,804,640	8,296,716	'23.4.1 ~ '23.6.30
	2,492,076	5,388,150	7,880,226	'23.7.1 ~ '23.12.31

* (고정원가항목) 차량감가상각비, 차량구입금융비, 보험료, 번호판이용료, 지입료, 자동차세, 정기검사비, 환경개선부담금, 협회·단체비, 세무신고비, 통신비, 차고지비 및 주차료, 숙박비, 사회보험료, 출퇴근비, 정보망이용료

** (변동원가항목) 주연료비, 통행료,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, 타이어비, 세차비, 기타소모품비

나. 1km 단위 차주 원가

(단위 : 원/km)

품목	단위 원가	비고
1톤 일반형 화물차	521	'23.1.1 ~ '23.3.31
	506	'23.4.1 ~ '23.6.30
	489	'23.7.1 ~ '23.12.31
5톤 일반형 화물차	668	'23.1.1 ~ '23.3.31
	642	'23.4.1 ~ '23.6.30
	611	'23.7.1 ~ '23.12.31
12톤 일반형 화물차	772	'23.1.1 ~ '23.3.31
	743	'23.4.1 ~ '23.6.30
	709	'23.7.1 ~ '23.12.31
25톤 일반형 화물차	955	'23.1.1 ~ '23.3.31
	915	'23.4.1 ~ '23.6.30
	869	'23.7.1 ~ '23.12.31

다. 차주 운송정보

(단위 : km/월, 건/월, 일/월)

품목	월 운송거리	월 운송건수	월 운송일수	비고
1톤 일반형 화물차	3,552	40.3	21.2	'23.1.1 ~ '23.3.31
	3,552	40.3	21.2	'23.4.1 ~ '23.6.30
	3,552	40.3	21.2	'23.7.1 ~ '23.12.31
5톤 일반형 화물차	6,993	34.3	22.2	'23.1.1 ~ '23.3.31
	6,993	34.3	22.2	'23.4.1 ~ '23.6.30
	6,993	34.3	22.2	'23.7.1 ~ '23.12.31
12톤 일반형 화물차	8,414	26.0	22.3	'23.1.1 ~ '23.3.31
	8,414	26.0	22.3	'23.4.1 ~ '23.6.30
	8,414	26.0	22.3	'23.7.1 ~ '23.12.31
25톤 일반형 화물차	9,065	27.6	22.5	'23.1.1 ~ '23.3.31
	9,065	27.6	22.5	'23.4.1 ~ '23.6.30
	9,065	27.6	22.5	'23.7.1 ~ '23.12.31

[별표]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 대상 안전운송원가 부대조항

1.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 어음수수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비 정산 방식으로 원가에 포함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.
2. 차량구입비용 외 화물운송에 필요한 장비 및 구조변경(유압기, 가변기, 윈바디, 내장탑, 냉동·냉장 장치, 리프트 장치 등)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.
3. 주연료비는 제시된 톤급별 연비¹⁾와 유가²⁾를 참고 하여 실제 운송거리에 따른 비용을 운임협상 시 협의할 수 있음.
4.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주선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.
5.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.

1) (철강재) 2.8km/ℓ, (일반형 화물차) 1톤: 7.8km/ℓ, 5톤: 4.3km/ℓ, 12톤: 3.9km/ℓ, 25톤: 2.9km/ℓ

2) 1분기 적용 평균유가: 1,854.85원/ℓ, 2분기 적용 평균유가: 1,658.62원/ℓ, 3분기 적용 평균유가: 1,499.83원/ℓ

* 한국석유공사 공시 국내 주유소 자동차용 경유 판매가격(부가세포함)